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60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김동훈 의원 등 7명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발생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남양주시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인천 맨홀 사망사고, 코레일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와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시민·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남양주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상위법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성과 시의성을 갖춘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761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한근수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 설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위원장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설치 시 전문성,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독자성, 업무의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요청이 있을 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동일인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회피·제척·기피 규정을 명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위원의 책무와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의무 등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총괄부서가 위원회 운영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2년 이상 미운영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총괄부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30여개 위원회의 일부 세부 운영 방침이 본 조례안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를 운영하는 개별 조례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2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한근수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13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용어 등 그 밖의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남양주시 관련 위원회 조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명 및 용어, 문구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3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원주영 의원 등 13명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과 민·관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장학생 자격 요건 완화(안 제2조)
 -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장학금액 지원 기준 개선(안 제2조제3항, 제6조제2항)
 - (현행)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통·리장 장학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차액 지급

- (개정)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시기 조정(안 제4조, 제7조)
- (현행)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
- (개정) 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 ⇒ 타 장학금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강화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급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학금 지급 목적을 통·리장의 사기 진작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성적 및 입상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또한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시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으로 개선하여 실질적 지원효과를 높이고, 선발·지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합리성을 보완하였습니다.

- 통·리장은 지역발전과 주민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본 장학금 제도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을 통해 통·리장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64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정현미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 보조 및 위탁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 행사예산 공개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5조)
- 행사예산 표기 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 보조 및 위탁하는 행사

예산을 남양주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홍보물에 표기하여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행사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시성, 낭비성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사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안건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9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업유치·지원 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 및 사적 이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나. 주요내용

- 위촉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명시(안 제7조)
 - (현행) 연임 가능 → (개정)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8조제4호)
 - 제8조제4호는 안 제8조제5호로 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안은 남양주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으로서,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과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780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2023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수립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토지매입으로 계획된 사항을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본격적인 시설 조성 및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행정지원과

나. 주요내용

(1)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 개요	• 위치: 별내동 862 • 목적: 부지매입 • 기간: 2023 ~ 2026	• 위치: 별내동 862 • 목적: 부지매입 및 건립 • 사업기간: 2023 ~ 2029
사업 규모	• 부지면적: 3,200.4㎡	• 부지면적: 3,200.4㎡ • 연면적: 9,900㎡ • 층수: 지하2층~지상4층
사업비	86억원(시비 100%)	526억원(시비 100%) (부지매입 90억원, 설계 48억원, 공사 등 388억원)
예산 집행 계획	2023년: 86억원 (부지매입비)	2023 ~ 2025년: 70억원(부지매입비) 2026년도: 20억원(부지매입), 48억원(설계) 2027년도: 130억원(공사비) 2028년도 이후: 258억원(공사비)

(2) 사업개요

- 위 치: 별내동 862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 사업규모: 지하 2층 ~ 지상 4층
 - 부지면적: 3,200.4㎡
 - 연 면 적: 9,900㎡ [지상층 연면적 5,100㎡]
- 주요시설: 강좌실(문화, 교육, 체육 등), 다목적 강당, 청소년시설 등
- 사업기간: 2023년 ~ 2029년
- 총사업비: 526억원 [공사비 등(388), 설계비(48), 부지매입(90)]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전액시비) (단위: 억원)

합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526	49	21	68	130	258

○ 층별계획(안)

층 별	용 도	면적(㎡)
계		9,900
지하 2층	지하주차장(48대), 기계실, 전기실 등	2,400
지하 1층	지하주차장(50대), 창고 등	2,400
지상 1층	지상주차장(32대), 사무실, 회의실 등	600
지상 2층	문화강좌실, 교육강좌실, 카페, 강사실 등	1,500
지상 3층	헬스장, 체육강의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1,500
지상 4층	다목적강당, 연습실, 체험교실 등	1,500

※ 청소년 전용 공간(펀그라운드 별내) 추가 예정(실시설계 시 반영)

(3)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2. 10. 18. : 별내동 시장 방문 인사회 주민 요구사항(주민자치센터 확장 이전)
- 2023. 2. 9. : 주민의견 제출(복합커뮤니티센터 필요 시설 의견)
- 2023. 10. 20. : 부지매입 계약체결
- 2024. 7. 1. : (자체)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2025. 4. 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완료
- 2025. 7. 8. :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25. 하반기 :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심의
- 2026. 상반기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027. 상반기 : 공사발주 및 착공
- 2029. 상반기 : 준공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 개요	• 위치: 별내동 862 • 목적: 부지매입 • 기간: 2023 ~ 2026	• 위치: 별내동 862 • 목적: 부지매입 및 건립 • 사업기간: 2023 ~ 2029
사업 규모	• 부지면적: 3,200.4㎡	• 부지면적: 3,200.4㎡ • 연면적: 9,900㎡ • 층수: 지하2층~지상4층
사업비	86억원(시비 100%)	526억원(시비 100%) (부지매입 90억원, 설계 48억원, 공사 등 388억원)
예산 집행 계획	2023년: 86억원 (부지매입비)	2023 ~ 2025년: 70억원(부지매입비) 2026년도: 20억원(부지매입), 48억원(설계) 2027년도: 130억원(공사비) 2028년도 이후: 258억원(공사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2023년도 수시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LH 소유의 별내동 862번지(약 3,200㎡) 토지 매입으로 계획된 것을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토지매입이후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공사비가 추가되는 만큼 총 사업비는 86억에서 총 526억원(부지매입비 90억원, 설계비 48억, 공사비 388억)으로 증액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완료 및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조기 납부에 따른 약2억원의 이자 비용 절감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 추진시 구체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의 안 번 호	781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관련 토지매입-----	산림복지과
·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화도읍

나. 주요내용

(1)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관련 토지매입

(가) 사업개요

- 목 적: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설치
- 위 치: 호평동 산27-2번지
- 사업규모: 면적 약 2,100㎡ (사방댐 1개소, 골막이 1개소, 바닥막이 등)

○ 사업기간: 2025. 7.~2026. 6.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계(①+②)	①부지매입비	② 사방시설 설치비		
			소계	공사비	용역비
금액(천원)	525,000	200,000	325,000	300,000	25,000
보조율(%)	국43, 도13, 시44	시100	국70, 도21, 시9		

(나) 추진현황

- 2024. 7. 17. 호평동 산27-2 호우 피해 발생
- 2024. 8. ~ 9.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사방사업 기본설계 용역 시행
- 2024. 11. 2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市 공고 제2024-529호)
- 2024. 11. 28. 사방사업 계획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견조회
- 2025. 1. 23. 소유자(왕십리중앙교회) 의견 제출
 - ☞ 적절한 보상 없이 동의 불가
- 2025. 4. 22.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道 산림녹지과 + 한국치산기술협회)
- 2025. 4. 23.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 요청
- 2025. 4. 30. 소유자(왕십리중앙교회) 의견 회신
 - ☞ 사방시설 설치부지 매매 희망
- 2025. 6. 18. 2026년 사방사업 예산 수요 제출 (市 → 道)
- 2025. 8. 13.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다) 향후 추진계획

- 2025. 10.~11. 실시설계용역
- 2025. 12. 사방지 지정 고시
- 2026. 1.~6. 토지 매입, 사방시설 설치

(2)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가) 사업개요

- 목 적: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도모
- 위 치: 수동면 운수리 16-4,(259㎡) 17-7(57㎡) 17-6(41㎡)
- 연 면 적: 199.21㎡
- 사업규모: 지상1층~지상2층
- 사업기간: 2025. 2. ~ 2026. 06.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계	건축비	용역비	기타
금 액	1,110,000	1,060,000	50,000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비고
시 비	1,110,000	830,000	280,000	

- 층별 계획(안)

층 별	연 면 적(㎡)	용 도	비고
지상1층	139.15	단독주택(경로당)	
지상2층	60.06	마을회관	
합 계	199.21		

- 토지현황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대지	도로		
운수리 16-4	대지	259	199	60	섬말마을회	
운수리 17-6	답	1,254	41	-	박준수	상호교환
운수리 17-7	유원지	98	57	-	섬말마을회	잔여면적 41㎡ 교환
합 계		1,611	297	60		

- (나) 추진현황

- 2024. 9. 2. 25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제출(수동면 →화도읍)
- 2025. 1. 2. 본예산 확보

○ 2025. 2. 12.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5. 7. 21.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다) 향후 추진계획

○ 2026. 2.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6. 2. ~ 2026. 6. 마을회관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1)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관련 토지매입

○ 본 안건은 호평동 산27-2번지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와 산사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인 사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4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토지 소유자 협의 및 타당성 평가 등 관련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 향후 시설 설치 등 후속 절차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 토지 매매에 1차 동의한 토지 소유자와 매입 금액에 대한 합의가 매끄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지매입 시, 시(市) 재정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 본 사업은 주민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본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2)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 다음, 수동면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약 50여년 간 사용 중인 마을회관은 부지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시설이 협소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주민 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인근 시립 도촌어린이집을 신축부지로 활용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실시설계 착수,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해당 부지 내 개인 소유지 41㎡와 마을회 소유 부지 간 상호교환을 통해 토지 문제 또한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태양광 설비, 방송장비 설치 등 마을회관 기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82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신설 테니스장, 국궁장)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함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체육과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신설 테니스장(별내배수지·용암천·다산진건 체육시설) 운영·관리
 - 예약시스템, 강습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부대시설 포함)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 국궁장(천마장) 운영·관리
 - 안전 지도, 강습, 궁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부대시설 포함)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2) 위탁시설 개요

○ 신설 테니스장 : 3개소 6면

시설명	위치	코트	비고
별내배수지 체육시설	별내동 산157-47 일원	2면	‘25.8.23. 개장
용암천 체육시설	퇴계원읍 퇴계원리 364-26 일원	2면	‘25.12.준공 예정
다산진건 체육시설	다산동 6138	2면	‘26.2.준공 예정

○ 국궁장(천마정)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야외시설	과녁 4개, 사대 28개, 거리 145m	
실내시설	과녁 2개, 사대 4개, 거리 15~20m	
주차면수	30면	
부대시설	- 샤워실 남(1), 여(1) - 사물함 남(25), 여(14) - 화장실 남(대1, 소2), 여(대3, 다용도1)	

※ 지상 2층 / 부지면적 19,583㎡, 건축면적 392.6㎡, 연면적 627.48㎡

(3) 민간위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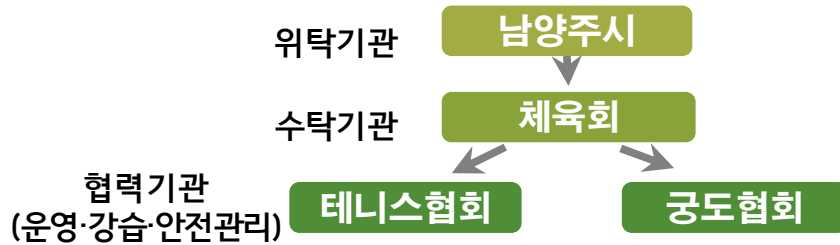
○ 2026. 1. 1. ~ 2028. 12. 31.(위탁일로부터 3년)

※ 위탁일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남양주시체육회)

- 시설 운영의 공익성 · 효율성 · 지역사회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양주시 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75,600천 원 / 2026년
- 산출내역

구분	내용		금액(천원)	비고
[합 계]			175,600	
공공 체육시설 (국궁장 및 테니스장)	민간 위탁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78,000	'24년도 시설 운영관리 비용 참고
		시설 보수·유지관리	97,600	

※ 2026년도 위탁 운영에 대한 상반기 수입 및 지출 비용을 분석하여, 수입이 지출을 충당 가능한 경우 자립형 위탁 방식으로 전환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체육 시설인 신설 테니스장 3개소와 국궁장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두 시설 모두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 시 협력기관인 테니스협회와 궁도 협회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수탁기관과 이용자 간 유대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협회 보유 지도자 인력풀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용 대비 운영 효과가 크다는 점 등 시민 만족도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83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화도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였고, 시설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화도복지회관은 화도읍 동부권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 인근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화도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2004년부터 21년간 원활한 소통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하여 수강자가 지속 증가하고 이용 만족도도 높으므로, 해당 마을공동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위탁사무 내용

-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 강의실, 헬스장 등 프로그램 운영 및 대강당 대관
- 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관리
- 각종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 기타 화도읍과 화도복지회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3) 위탁시설 개요

- 시설 개요

시 설 명	화도복지회관
소 재 지	남양주시 경춘로 2192번길 8-11
개 관 일	2004. 7. 21.
시 설 규 모	○ 대지면적 : 약2,813㎡, 연면적 : 2,405.86㎡(지상5층) ※위탁 범위 3~5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등
사 업 내 용	프로그램 운영 등
위 치 도	

(4) 위탁기간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7. 31. (4년)

(5) 수탁기관 선정 방식

- 협약에 의한 관리운영 위탁(수의계약)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도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동 복지회관은 2004년 개관 이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그간 시의회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않아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장기간 운영 경험과 지역 밀착성을 갖춘 마을공동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양질의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갱신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한 운영과 사후 감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84
------------	-----

2025. 9. 1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9. 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하였고, 시설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운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묵현복지문화센터는 화도읍 서부권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여가활동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 인근 마을 주민으로 구성되어 설립 과정부터 직접 참여한 마을공동체에 해당 시설을 위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위탁사무 내용

- 시설 및 비품·장비 유지·관리
- 취미교실 및 헬스장 운영
- 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관리
- 각종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3)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 설 명	묵현복지문화센터
소 재 지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7번길 19-17
개 관 일	(본관) 2011. 04. 23. / (신관) 2022. 01. 01.
시 설 규 모	○ 대지면적: 1,160m ² ○ 연면적: 784.85m ² (본관) / 497.68m ² (신관) ○ 주요시설: 사무관리실, 취미교육실, 헬스장 등
사 업 내 용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장 운영 등
위 치 도	

(4) 위탁기간

- 위탁기간 : 2025. 4. 1. ~ 2028. 3. 31.(3년)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협약에 의한 관리운영 위탁 (수의계약)**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근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 기준 6.-나-1) 수의계약 대상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금 47,100천원(2025년 기준)

- 예산내용: 목현복지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예산액	47,100	42,000	1,000	4,100

○ 산출근거

- 지원근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지원)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남양주시 목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목현복지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동 센터는 2011년 개관 이후 마을공동체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나, 그간 시의회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않아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검토 결과, 동 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거점으로서, 시설 설립 단계부터 참여해 온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특성상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강화해야함. 아울러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갱신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한 운영과 사후 감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